Z - 50 - 2022

작업중지에 관한 지침

2022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안전문화진흥원
- 제·개정 경과
 - 2022년 12월 리스크관리분야 표준제정위원회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 - 안전보건경영시스템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 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 해당 최근 개정 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2년 12월 31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KOSHA GUIDE Z - 50 - 2022

작업중지에 관한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상황(장소, 직무 등)이 자신, 동료, 수급인, 공 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믿을 때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여 작업중지 권리를 효과적으로 운 영되도록 하며, 결과적으로 위험상황 발생을 감소시켜 산업재해 및 공공재해를 예 방하여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작업중지 권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재해 및 공공재해를 예방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선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다.

3. 용어의 정의

4. 일반사항

- 4.1 이 지침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교육을 받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.
- 4.2 이 지침의 절차 범위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급인은 그들의 구체적인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여야 한다.

Z - 50 - 2022

5. 책임

- 5.1 근로자: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
- 5.1.1 작업과 안전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직업을 중단하거나 할당된 작업 수행을 거부할 책임과 권한을 보복의 두려움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. 작업중지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관련 문제. 불안전한 상태, 작업지시서의 명확화, 추가적인 관리방안 재안 등을 동료,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와 논의할 수 있다.
- 5.1.2 근로자는 자신, 동료가 위험 상황에 처했다고 믿을 때 보복의 두려움 없이 즉시 작업중지를 작업중지를 시작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.
- 5.1.3 근로자가 불안전하다고 믿거나 작업중지를 시행하는 조건 또는 작업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. 작업중지는 불안전 상태나 관련 작업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나 관리 감독자, 관리감독자를 지명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5.1.4 제기된 작업중지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경우 작업재개에 앞서 공식 채널을 통해 감독기관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.
- 5.1.5 근로자가 익명을 원한다면 안전관리자 또는 노동조합 안전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작업중지를 시작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.
- 5.2 관리/감독: 관리/감독을 통해 근로자가 제기한 작업중지의 근본 원인을 신속하게 해결한다.
- 5.2.1 개인이 제기한 특정 작업 또는 작업에서 야기한 작업중지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.
- 5.2.2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 또는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 게 문제해결 결과를 알려준다. 작업중지를 제기한 근로자가 휴가, 교대그무, 교육 등으로 부재하고 있을 경우, 작업 재개전에 안전관리자 또는 노동조합 안전담당 자에게 문제해결 결과를 알려준다.
- 5.2.3 제기한 작업중지관련 문제가 근복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, 노동조합원이 영향을 받을 경우 안전경영 대리인과 노동조합 안전 부서장에게 통보한다.

Z - 50 - 2022

- 5.2.4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우려스러운 작업을 중지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 어떤 보복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.
- 5.2.5 작업증지가 비조합원에 의해 제기된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조합 안전담당자에게 알린다.
- 5.3 안전관리자와 노동조합 안전담당자: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
- 5.3.1 안전 문제 및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, 감독 및 관리를 지원한다.
- 5.3.2 근로자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연락을 했을 때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에게 보고한다.
- 5.3.3 작업중지관련 해결 방안이 신고자의 교대 근무후 또는 부재중 완료되었을 때는 작업중지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.
- 5.3.4 작업중지의 해결 방안을 찾는데 익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장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여야 한다.

6. 실행

6.1 효율적으로 즉시 실행한다

7. 절차

- 7.1 근로자가 작업과 환경이 다음과 같이 불안전하다고 믿는다면 작업을 중지한다.
- 7.1.1 자신, 동료, 계약 직원, 대중이 위험에 처한 상태에 처해있다.
- 7.1.2 현 상황이 안전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설비에 피해를 준다.
- 7.1.3 현 상황이 규제 기준을 초과한 방사선 또는 화학물질 누출 등의 유해위험요인이

Z - 50 - 2022

근로자에게 노출된다.

- 7.1.4 작업 지시를 명확히 하게 하고 추가적인 관리를 제안할 경우
- 7.2 작업이 안전한 상태에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근로자가 적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 감독 및 경영층,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 즉시 통보한다.
- 7.3 관리자 및 감독자는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가 제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.
- 7.3.1 작업중지를 제기한 개인 또는 적절한 개인이 없을 경우 근로자측 안전 담당자에 게 연락하여 제안된 조치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토록 한 후 작업 복귀를 진행한다.
- 7.3.2 작업재개 전에 모든 시정조치 및 보완조치가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작업중지관 런 일지, 보고, 추적관리, 해결방안 등이 문서화 되었는지 확인한다.
- 7.3.3 수급인의 작업중지가 계약서상의 작업중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한다.
- 7.4 작업중지가 근로자와 관리자 상호 합의하에 해결되지 않은 경우 작업중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감독자는 안전 대리 경영인 및 노동조합 안전 대표에게 통보한다. 장업중지 해결은 작업 복귀에 필요한 조치 또는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안전 대리 경영인 및 노동조합 안전 대표에게 있다.
- 7.5 안전 대리 경영인과 노동조합 안전 대표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상호 합의할 때 작업은 재개될 수 있다.
- 7.6 목표는 가장 낮은 계약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.